거창군
Geochang County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591호 2017. 5. 10.(수)

선결	기관의 장

조 례

거창군 조례 제2365호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 3
거창군 조례 제2366호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7
거창군 조례 제2367호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 10
거창군 조례 제2368호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 16
거창군 조례 제2369호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 21
거창군 조례 제2370호 거창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 24
거창군 조례 제2371호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 26
거창군 조례 제2372호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34
거창군 조례 제2373호 거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37
거창군 조례 제2374호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 41
거창군 조례 제2375호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 44
거창군 조례 제2376호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 80
거창군 조례 제2377호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 86
거창군 조례 제2378호 거창군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 95
거창군 조례 제2379호 거창군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 105
거창군 조례 제2380호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 115
거창군 조례 제2381호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 ····· 119
거창군 조례 제2382호 거창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 ····· 129

규 칙

거창군 규칙 제1224호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31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7-579호 거창군관리계획(시설결정: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열람 공고 ····· 138
거창군 공고 제2017-582호 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164, 3-165호선)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 140

회람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940-3043, 행정 3043)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양 동 인

2017년 5월 10일

거창군 조례 제2365호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6개월 이전부터”를 “1개월 전부터”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군에 환급 조치한다.”를 “군에 환급 조치하고, 군수는 환급금 전액을 피보험자 부모에게 지급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원대상 자격) ①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대상자는 사유발생일 현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에 한정한다. 다만, 제5조제3호의 경우 가임여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5조제5호의 지원대상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으로서 예방접종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5조제6호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같은 조 제7호 지원대상자 중 태아 건강보험은 임신확인일, 출생아 건강보험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u>6개월 이전부터</u>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에 출생신고를 한 사람으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 자격)** ①-------- ---------- ---------- ---------- ---------- ---- ②---------- ---------- ---------- ---------- ---------- ③---------- ---------- ---------- ---------- ------- <u>1개월 전부터</u> --------- ---------- ---------
제9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① 읍·면장은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지원대상자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을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 자격 상실 등 지원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지급을 중단한다. ③ 태아·출생아 건강보험료 환수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아·출생아 건강보험은 만기 환급형으로 협약업체에서는 만기 시점에서 만기해약금을 <u>**군에 환급 조치한다.**</u> 2.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기간 내에 다른 시·군·구로 전출 시 보험계약이 해지되며 그동안 군에서 지급한 보험료의 해약환급금은 군수입으로 귀속된다.	**제9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①--- ---------- ---------- ---------- ②---------- ---------- ---------- ③---------- ---------- 1.---------- ---------- -------<u>**군에 환급 조치하고, 군수는 환급금 전액을 피보험자 부모에게 지급한다.**</u> 2. ---------- ---------- ----------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셋째아이 이상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만기환급금 수익자 변경 (거창군 귀속 ⇒ 피보험자)

- 거창군수가 환급받아 피보험자(출생아의 부모)에게 지급

○ 관련조문 : 제9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제3항제1호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보험 협약업체인 KDB생명(주) 산출자료에 의함

나. 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총 비용		0	0	0	0	0	
세출	군비	74,000	77,000	60,000	92,000	103,000	
세입	군비	74,000	77,000	60,000	92,000	103,000	

3. 관련 의견

○ 태아·출생아 건강보험은 만기 환급형으로 만기시점에서 변동금리 적용 등 만기환급금 차액 발생 가능성이 있음.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보험사가 만기환급금 전액을 군에 환급조치하고 거창군수는 환급금 전액을 피보험자 부모에게 지급

- 2018년도 예산 확보액(예정): 74,000천원(군비)

작성자: 행정과장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7~29

제출일자	2017. 4. 24.
발 의 자	김향란의원 외 6명

1. 제안이유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를 위하여 각종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책을 추진하면서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장려 지원대상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6조)

○ 당초: 출산장려금 및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은 출생일 및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변경: 출산장려금 및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은 출생일 및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개월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나.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만기환급금 수익자를 변경함(안 제9조)

○ 당초: 거창군

○ 변경: 피보험자(출생아)의 부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지방자치법」제9조, 「지방재정법」제17조,「경상남도 저출산대책에 관한 지원 조례」제5조

나. 예산조치: 2018년도 세입 74,000천원, 세출 74,000천원 예정

다. 합　　의: 기획감사실, 행정과, 보건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4. 7.~4. 1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양 동 인

2017년 5월 10일

거창군 조례 제2366호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김천리와 송정리 구역란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의 가지리 명칭란 중 “지내”를 “갈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제2조 관련)

읍·면명	리명칭	구 역
거창읍	김천리	종래 김천동 일원 중 김천리 46, 47-2번지를 제외한 지역, 종래 김천동 일원 중 김천리 230, 230-1, 231-1, 231-2, 231-3, 231-4, 231-10, 305, 305-1, 305-2, 305-3, 305-4, 305-29, 305-32, 305-33, 305-34, 305-35, 354-41, 305-42, 305-43, 305-44, 305-45, 438-2, 438-3, 441-2, 441-3, 455-4번지 27필지 중 16,405제곱미터를 제외한 지역, 종래 대평리 일원 중 1303-1, 1303-2, 1303-3, 1303-5, 1304-8, 1463-10, 1473-15번지
	송정리	종래 송정리 일원 중 산107~산109, 산110-1, 산118, 산119-5, 산120, 산121, 산122, 산144, 1004~1047, 1085~1087, 225-2, 1059-2~1059-35번지를 제외한 지역 종래 김천동 일원 중 김천리 230, 230-1, 231-1, 231-2, 231-3, 231-4, 231-10, 305, 305-1, 305-2, 305-3, 305-4, 305-29, 305-32, 305-33, 305-34, 305-35, 354-41, 305-42, 305-43, 305-44, 305-45, 438-2, 438-3, 441-2, 441-3, 455-4번지 27필지 중 16,405제곱미터를 포함한 지역

〔별표 2〕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제3조 관련)

읍면명	리명칭	정수	행정리의 명칭
거창읍	가지리	5	개화, 중촌, 갈지, 교촌, 성산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7~30

제출연월일	2017. 4. 04.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거창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2개의 법정리로 이루어진 일부 부지에 대하여 구역 내 도로경계면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정비하고, 거창읍 가지리의 행정리 명칭을 지역특성 및 역사적 전통,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정리의 구역을 변경함.(안 별표 1)

○ 김천리 중 일부를 송정리로 변경(27필지 중 16,405제곱미터)

나. 거창읍 가지리의 행정리 명칭을 변경함.(안 별표 2)

○ 지내 ⇒ 갈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제4항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2. 21.~3. 13.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양 동 인

2017년 5월 10일

거창군 조례 제2367호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를 “거창군 거창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호 중 “거창승강기산업밸리”를 “거창승강기밸리”로 한다.

제2조제13호다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집단화 투자유치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승강기산업체가 집단화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준용하여 특별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 중 “「거창군세 감면조례」”를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또는 가등기”를 “가등기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업을 사업개시일부터 7년이상 영위”를 “사업을 군수가 정산완료를 통보한 날부터 5년간 영위”로 “타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6호 중 “토지를 7년”을 “토지를 군수가 정산완료를 통보한 날부터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7년”을 “군수가 정산완료를 통보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17조 중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를, 보조금 집행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거창군 거창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승강기산업밸리의 원활한 조성과 승강기산업체의 유치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산업도시로의 동반성장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거창승강기밸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창승강기산업밸리”(이하 “밸리”라 한다)란 승강기산업과 관련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지자체 등이 상호 연계와 기술협력을 통하여 승강기산업 집적을 활성화하고 승강기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지역을 말한다. 2.~12.(생 략) 13. (생 략) 가.~나.(생략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14.~15.(생 략)	제2조(정의) ---------- 1. “거창승강기밸리”---------- 2.~12.(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가.~나.(현행과 같음)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8조(집단화 투자유치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승강기산업체가 집단화하여 밸리에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로서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관련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집단화 투자유치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승강기산업체가 집단화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준용하여 특별지원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세제상의 지원) 군수는 밸리의 원활한 조성과 승강기산업체의 유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거창군세 감면조례」,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세제상의 지원)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제15조(투자 이행담보 및 사후관리) ①~② (생 략) ③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의 투자계획 이행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사업개시일부터 7년 이상 영위하여야 하며, 타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투자 이행담보 및 사후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가등기 또는 보증보험증권---------- ④---사업을 군수가 정산완료를 통보한 날부터 5년간 영위---다른 업종--------------------------------
제16조(지원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생 략)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 착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1.~5. (생 략) 6.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 또는 임대한 토지를 7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7. 공장 등의 이전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7년 이내에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규모를 현저히 축소하는 경우 8. (생 략) ③ (생 략)	제16조(지원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1.~5. (현행과 같음) 6. ---------------------------------토지를 군수가 정산완료를 통보한 날부터 5년------------------------------- 7. -------------------------------군수가 정산완료를 통보한 날부터 5년--------------- 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투자유치 촉진에 관하여는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산업구조 고도화에 관하여는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를, 보조금 집행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각각 준용한다.	**제17조(다른 조례의 준용)**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7~31

제출연월일	2017. 4. 14.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거창승강기산업밸리"보다 더 포괄적 의미인 "거창승강기밸리"로 용어를 변경하여 대내외 이미지를 강화하고, 보조금 사후관리 기간과 지원취소 및 환수 기간을 관련 법령 개정내용과 맞추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괄적 의미로 용어 변경(안 제명, 제1조, 제2조제1호)

○ 거창승강기산업밸리 ⇒ 거창승강기밸리

나. 승강기산업체에 보조금 지원 후 사후관리 기간 변경(안 제15조제4항)

○ (현행) 7년 ⇒ (변경) 5년

다. 보조금 지원 취소 및 환수 기간 변경(안 제16조제2항제6호·제7호)

○ (현행) 7년 ⇒ (변경) 5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9조, 「지방재정법」제17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7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22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3. 10.~3. 3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양 동 인

2017년 5월 10일

거창군 조례 제2368호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8. 건설 등에 관한 사항”란, “10. 농·수·축산 등에 관한 사항”란, “11.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단위: 원)

8. 건설 등에 관한 사항			
(1)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1건	1,000	
(2) 소하천 점용·사용기간 연장신청	1건	1,000	
~~(3)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	~~1건~~	~~1,000~~	별표 제57호 삭제
~~(4)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회복 신청~~	~~1건~~	~~1,000~~	별표 제58호 삭제
~~(5) 폐천부지 교환 신청~~	~~1건~~	~~1,000~~	별표 제59호 삭제

10. 농·수·축산 등에 관한 사항			
(1) 축사 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1건	800	
(2) 낚시어선업 신고	1건	2,500	
(3)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정치망어업)	1건	9,000	
(4)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1건	7,500	
(5)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1건	5,000	
(6) 내수면어업 신고	1건	1,000	
(7)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1건	5,000	
(8) 내수면 유해어업의 사용허가 신청	1건	3,000	
(9)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	
(10)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	
~~(11) 수산물가공업 신고~~	~~1건~~	~~1,000~~	별표제104호 삭제

11.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가)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1건	100,000	
(나)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사항 변경 허가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1건	40,000	별표제138호 개정

(다)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1건	40,000	
(라)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1건	20,000	별표 제137호 개정
(마)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1건	100,000	
(바)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 허가	1건	40,000	
(사)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1건	40,000	
(아)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1건	20,000	
(2) 치과기공소 관련 신고			
(가)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	
(나)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1건	10,000	별표 제133호 개정
(3) 안경업소 관련 신고			
(가)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	
(나)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1건	10,000	별표 제134호 개정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7~32

제출연월일	2017. 4. 04.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16.12.30.)개정에 따라 무료화 등의 사유로 수수료 규정 일부 삭제 및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삭제사항 반영(안 별표)

○ 삭제: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회복 신청, 폐천부지 교환 신청, 수산물가공업 신고

나. 수수료 변경사항 반영(안 별표)

○ (현행)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추가)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에 한함)

⇒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에 한함)

⇒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별표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3. 22.~4. 3.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양 동 인

2017년 5월 10일

거창군 조례 제2369호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 제7항)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군수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4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용료 감면율”은 100퍼센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대부계약일 또는 사용허가일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대부 또는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제28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② 군수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분납 나.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분납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 가. 50만원 이하 : 3개월 이내 2회 분납 나.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분납 다. 1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분납	② 군수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④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대부료의 감면) ①~⑥ (현행과 같음)	제30조(대부료의 감면) ①~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군수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용료 감면율”은 100퍼센트로 한다.
⑦-------제5항----------	⑧ 제1항부터 제7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 또는 면제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감면 또는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7~33

제출연월일	2017. 4. 04.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공유재산의 분할납부의 범위,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에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 반영

- 공유재산 사용료의 분할납부 규정 신설(안 제28조제2항)
-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규정 신설(안 제30조제7항)

※ 법령위임조례(규제완화) 정비과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4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3. 10.~3. 30.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전국 개정현황(1): 강릉시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양 동 인

2017년 5월 10일

거창군 조례 제2370호

거창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거창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필요한 사항과「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양도 및 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을 할 수 있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감차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다.

제3조(신규면허)「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할 경우 초과 달성한 감차만큼 신규면허를 허가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의안 번호	2017~34

제출연월일	2017. 4. 04.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09. 11. 28. 이후)한 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금지된 해당 면허의 양도·상속을 허용하고, 연도별 감차목표 초과 달성 시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면허 발급을 허용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령위임조례(규제완화) 정비과제

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 완화(안 제2조)

○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양도 또는 상속을 허용, 다만 감차계획 수립 시 양도할 수 없음

※ 위임근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나. 감차목표 초과 달성분의 범위에서 신규면허 허용(안 제3조)

※ 위임근거:「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3. 14.~4. 3.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제정완료: 김해시, 거제시, 통영시, 함안군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양 동 인

2017년 5월 10일

거창군 조례 제2371호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설치한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는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33에 둔다.

제3조(이용신청)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다만, 일별·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이용료)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한 자에게 공영차고지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이용료는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별·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한다.

③ 월 또는 연 정기권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원하는 경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영차고지 이용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이용료(일할 계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될 때
2. 공영차고지의 이용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그 이용을 취소할 때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제6조(이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100퍼센트
2. 화물운송 관련 단체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는 행사: 100퍼센트
3. 그 밖에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제7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며 그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8조(이용자의 행위제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영차고지 이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5. 환경 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6.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료 (제4조 관련)

구 분	정 기 권		시 간 요 금	
	연	월	단 위	금 액
1.5톤 미만	240,000원	20,000원	2시간 이하	무 료
			12시간 이하	1,000원
			24시간 이하	2,000원
1.5톤 이상	600,000원	50,000원	2시간 이하	무 료
			12시간 이하	2,000원
			24시간 이하	5,000원

비고

1. 화물자동차 정기권 등록 시 출·퇴근 차량과 근무자 차량은 무료로 한다.
2. 주차장에 들어온 후 24시간 이후는 1일 단위로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휴게시설(샤워실, 수면실, 휴게실)은 무료 이용 가능함
4.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위한 차고지 이용료
   - 화물자동차 면적(제곱미터) × 500원 × 12월

［별지 제1호서식］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 수 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이용(변경) 신청시설

구 분	운송사업허가	차 고 지 이 용			
면적/대수	제곱미터 대	차량번호		차종 및 톤수	
		색 상		용 도	
		출·퇴근 차량 번호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 )개월				
이 용 료					
변경사유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승인

［별지 제2호서식］

거창군 제　　호

공영차고지 이용 증명서

■ 성　　명:
■ 주　　소:
■ 생년월일:
■ 차량번호:
■ 이용면적:
■ 이용기간:
■ 차 고 지: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위 차량에 대하여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자 (인)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예산 지원

○ 관련 조문: 제1조(목적)

2. 비용추계의 결과

○ 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총 비용		27	90	90	90	90	387
세출	국비						
	도비						
	군비	27	90	90	90	90	387
	소계(a)	27	90	90	90	90	387

3. 관련 의견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하여 경남도의 서북부권역 물류단지 네트워크 구축 및 주택가 이면도로 밤샘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해 필요함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인건비: 71,739천원

○ 경상경비: 5,000천원

○ 공과금: 6,000천원

○ 일반관리비: 2,068천원

○ 이윤: 5,192천원

작성자: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의안 번호	2017~35

제출연월일	2017. 4. 04.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명칭과 위치를 정함.(안 제2조)

나. 공영차고지의 이용신청에 관하여 정함.(안 제3조)

다. 공영차고지의 이용료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 별표)

○ 연 또는 월 정기권, 시간단위 요금 부과

라. 이용료 반환 및 감면사유를 정함.(안 제5조, 제6조)

마. 이용자의 의무 및 행위제한에 관하여 정함.(안 제7조,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
「지방자치법」제136조, 제139조, 제144조

나. 예산조치: 2017년 27백만원 확보(기투자 987백만원)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3. 13.~4. 3.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반영함(별지 제1호서식 성별구분항목 신설)

(6) 전국 조례 제정 완료(7): 경기도, 광주광역시, 춘천시, 광양시, 정읍시, 강진군, 진주시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양 동 인

2017년 5월 10일

거창군 조례 제2372호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7~36

제출연월일	2017. 4. 04.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주차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 완화 기준 신설(안 제17조)**

-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

※ 법령위임조례 정비과제(규제완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제19조의13제4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3. 13.~4. 3.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조례개정 완료(8): 진주, 통영, 거제, 사천, 고성, 남해, 하동, 산청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양 동 인

2017년 5월 10일

거창군 조례 제2373호

거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거창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거창군에 소재를 둔 향교로 한다.

제4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 교육
2. 인성 교육
3. 예절 교육
4. 의례 교육
5. 문화예술 교육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문화행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

2. 한시·한문 등의 경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전통의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향
2. 기로연, 향음주례, 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3. 전통혼례, 성년례 등의 관·혼·상·제 관련 의례
④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및 시설 등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을 향교와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 ① 제3조의 지원대상자가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군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거창 향교 지원 및 육성에 따른 교육, 행사, 시설 지원에 필요한 비용

○ 관련 조문: 제6조(사업비 지원)

2. 비용추계의 결과

○ 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총 비용(a - b)		66	66	66	66	66	330
세출	국비	0	0	0	0	0	0
	도비	6.6	6.6	6.6	6.6	6.6	33
	군비	59.4	59.4	59.4	59.4	59.4	297
	소계(a)	66	66	66	66	66	330
세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소계(b)	0	0	0	0	0	0

3. 관련 의견

○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으로 인의예지충효를 실천하는 선조들의 사상을 배우고 전통문화를 계승하여 역사문화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교육 및 행사 지원

- 각종 교육 및 전통계승 행사 지원: 66,000천원/연간

작성자: 문화관광과장

거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의안 번호	2017~30

제출일자	2017. 4. 24.
발 의 자	변상원의원 외 5명

1. 제정이유

향교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거창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지원 대상 규정(안 제3조)
다. 지원 사업 규정(안 제4조)
라. 사업비 지원 규정(안 제6조)
마. 지원 신청 규청(안 제7조)
바. 지원 결정 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문화예술진흥법」제3조, 「지역문화진흥법」제4조, 「지방재정법」제17조, 「경상남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연간 66,000천원 예정
다. 합　　의: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4. 7.~4. 1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양 동 인

2017년 5월 10일

거창군 조례 제2374호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연공원법」 제20조"를 "「자연공원법」 제9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10인"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를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

⑤ 특별위원은 해당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이 되며,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임기) 제2조에 따른 위촉위원과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자연공원법」 제9조---------- --- ---------- ---------- ----------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③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농업축산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다음 각호의 자는 특별위원이 된다. 1. 당해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읍장 또는 면장 2. (생 략) <신 설>	제2조(구성)---------- ---------15명---------- ---------- ② (현행과 같음) ③ ---------- ----------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 관계인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 <삭 제> 2. (현행과 같음) 3.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
⑤ 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⑤ 특별위원은 해당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이 되며,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조(임기) 제2조 제3항의 위촉위원 및 동조 제4항 제2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임기) 제2조에 따른 위촉위원과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7~31

발의일자	2017. 4. 24.
발 의 자	이홍희 의원 외

1. 제안이유

「자연공원법」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군립공원위원회 구성·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위촉위원에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을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군립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정비함(안 제2조)

- 위원회 구성인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조정함
- 위촉위원을 군립공원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포함
- 특별위원을 공원구역 관할 읍·면장을 삭제하고, 공원구역안의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 추가 및 특별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자연공원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 산림과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4. 7.~4. 1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조례현황: 거제시, 함안군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양 동 인

2017년 5월 10일

거창군 조례 제2375호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거창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 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한 번에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 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군수는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로서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거창군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제2항제1호·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 제목 “(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을 “(우수 옥외광고사업자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종전 제2항) 중 “광고산업”을 “옥외광고산업”으로 “광고업자”를 “옥외광고사업자”로 “우수광고업자”를 “우수 옥외광고사업자”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세로 규격이”를 “높이”로 “가로형간판”을 “광고물등”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5항 중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24조제목·제1항·제4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제3호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6호·제17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4호·제15호서식을 별지 제11호·제12호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10호·제11호·제12호(종전 제12호·제14호·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제3호·제6호·제9호서식 중 “생년월일”란과 별지 제7호서식 중 “성명”란에 “(남/여)”를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 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7. ----------거창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

등과 다른 회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2.~6.(생 략)	---------- 1.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6.(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한 번에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군수는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로서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거창군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생 략)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또는 주민대표자 나. 군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7. (생 략) ③ (생 략) 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1.---------- <삭 제> 2.~5. (현행 제4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우수 광고사업자 지정 등) <삭 제>

②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옥외광고산업---광고사업자----우수 옥외광고사업자------
③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13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삭 제>
③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4. (생 략)	③----------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2.~4. (현행과 같음)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 1. ----------

2. 세로 규격이 4미터 이상인 가로형간판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5. (생 략) ②~⑤ (생 략)	2. 높이----------광고물등 ---------- 3.~5. (현행과 같음) ②~⑤ (현행과 같음)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군수는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에 따른다.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지정게시대 관리업무의 공정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지침을 시달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삭 제>
제23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삭 제>
제24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제24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옥외광고사업----------
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별지 제10호서식----------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삭 제>
제25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교육의 위탁 등) ①----------옥외광고사업---------- ---------- ---------- ---------- ---------- ----------별지 제11호서식----------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	② ----------옥외광고사업---------- ----------별지 제12호서식----------

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⑧ (생 략)	---------- ---------- ------- ③~⑧ (현행과 같음)
제26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④ (생 략)	**제26조(수수료)** ① ---------- ---------- 1.~2. (현행과 같음) 3.----------**옥외광고사업** ---------- ②~④ (현행과 같음)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2조 관련)

광고물 등	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1) 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제곱미터미만	20만원
-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25만원
- 3제곱미터 이상 4제곱미터 미만	30만원
- 4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40만원
2)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제곱미터 이상 6제곱미터 미만	50만원
- 6제곱미터 이상 7제곱미터 미만	60만원
- 7제곱미터 이상 8제곱미터 미만	70만원
- 8제곱미터 이상 9제곱미터 미만	80만원
- 9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90만원
3)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상 12제곱미터 미만	100만원
- 12제곱미터 이상 14제곱미터 미만	120만원
- 14제곱미터 이상 16제곱미터 미만	140만원
- 16제곱미터 이상 18제곱미터 미만	160만원
- 18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180만원
4) **면적 20제곱미터**	200만원
- 20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나. 돌출간판	
1) **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제곱미터 미만	20만원
-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25만원
- 3제곱미터 이상 4제곱미터 미만	30만원
- 4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40만원
2)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제곱미터 이상 6제곱미터 미만	50만원
- 6제곱미터 이상 7제곱미터 미만	60만원

- 7제곱미터 이상 8제곱미터 미만	70만원
- 8제곱미터 이상 9제곱미터 미만	80만원
- 9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90만원
3)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상 12제곱미터 미만	100만원
- 12제곱미터 이상 14제곱미터 미만	120만원
- 14제곱미터 이상 16제곱미터 미만	140만원
- 16제곱미터 이상 18제곱미터 미만	160만원
- 18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180만원
4) 면적 20제곱미터	200만원
- 20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다. 지주 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미만	30만원
- 0.5제곱미터 이상 1제곱미터 미만	33만원
-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38만원
-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45만원
2)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제곱미터 이상 3.5제곱미터 미만	50만원
- 3.5제곱미터 이상 4제곱미터 미만	60만원
- 4제곱미터 이상 4.5제곱미터 미만	80만원
- 4.5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90만원
3)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제곱미터 이상 6제곱미터 미만	100만원
- 6제곱미터 이상 7제곱미터 미만	120만원
- 7제곱미터 이상 8제곱미터 미만	140만원
- 8제곱미터이상 9제곱미터 미만	160만원
- 9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180만원
4) 면적 10제곱미터	200만원
- 10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	
1)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제곱미터 미만	30만원
-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33만원
- 3제곱미터 이상 4제곱미터 미만	38만원
- 4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45만원
2)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제곱미터 이상 6제곱미터 미만	50만원
- 6제곱미터 이상 7제곱미터 미만	60만원
- 7제곱미터 이상 8제곱미터 미만	70만원
- 8제곱미터 이상 9제곱미터 미만	80만원
- 9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90만원
3)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상 12제곱미터 미만	100만원
- 12제곱미터 이상 14제곱미터 미만	120만원
- 14제곱미터 이상 16제곱미터 미만	140만원
- 16제곱미터 이상 18제곱미터 미만	160만원
- 18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180만원
4) 면적 20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상 25제곱미터 미만	200만원
- 25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미만	230만원
- 30제곱미터 이상 35제곱미터 미만	240만원
- 35제곱미터 이상 40제곱미터 미만	250만원
- 40제곱미터 이상 45제곱미터 미만	260만원
- 45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	280만원
5) 면적 50제곱미터	300만원
- 50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면적 5제곱미터 미만	30만원
-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40만원
-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15제곱미터 미만	50만원

- 면적 15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60만원
- 면적 20제곱미터	**65만원**
- 20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1제곱미터당	**5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30만원
- 애드벌룬(공) 2개	50만원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7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	
- 면적 5제곱미터 미만	30만원
-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40만원
-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15제곱미터 미만	50만원
- 면적 15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60만원
- 면적 20제곱미터	70만원
- 20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1제곱미터당	**5만원을 더한 금액**
2) 교통안내소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3)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4) **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면적** 10**제곱미터 미만**	150만원
- **면적** 10**제곱미터**	160만원
- 10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제곱미터 미만**	10만원
-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20만원
-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29만원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제곱미터 이상 4제곱미터 미만	35만원
- 4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45만원
다) **면적** 5**제곱미터**	50만원
- 5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1제곱미터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별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4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2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1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안전점검 종사자를 포함한다)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법령·조례 제·개정 시
행정처분 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그 밖의 교육	따로 정함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공고함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6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5제곱미터 이하	2,000원
- 면적 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2) 타사광고	
- 면적 5제곱미터 이하	**24,000원**
- 면적 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5제곱미터** 이하	10,000원
- 면적 **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마다 더하는 금액	500원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개당)	**6,000원**
다.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간판	
- 면적 10**제곱미터** 이하	30,000원
- 면적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마다 더하는 금액	4,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면적 10**제곱미터** 이하	12,000원
- 면적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바.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10,000원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제곱미터** 이하	2,000원
- 연면적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4,500원
- 면적 또는 연면적 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마다 더하는 금액	5,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400,000원
-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선박	10,000원
-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3,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3,000원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타. 현수막	
1) **일반현수막**	
- 10**제곱미터** 이하	3,000원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2)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 10**제곱미터** 이하	3,000원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파. 벽보(1건)	2,500원
하. 전단(500매마다)	2,500원
거. 전자게시대(1건)	**3,000원**
너.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4.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5.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벽보판, 전자게시대 등 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6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 면적 5제곱미터 이하**	**18,000원**
	- 면적 5제곱미터 초과 20**제곱미터** 이하	**26,000원**
	- 면적 20**제곱미터** 초과 1**제곱미터**당 더하는 금액	**1,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3.5**제곱미터** 이하	**18,000원**
	- 면적 3.5**제곱미터** 초과 10**제곱미터** 이하	**26,000원**
	- 면적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더하는 금액	**2,000원**
다. 옥상간판	- 면적 50**제곱미터** 이하	**27,000원**
	- 면적 50**제곱미터** 초과 70**제곱미터** 이하	**49,000원**
	- 면적 7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더하는 금액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면적 10**제곱미터** 이하	**18,000원**
	- 면적 10**제곱미터** 초과 20**제곱미터** 이하	**26,000원**
	- 면적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더하는 금액	**1,000원**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40**제곱미터** 이하	**14,000원**
	- 면적 4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더하는 금액	**800원**
아. 그 밖의 광고물등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별표 5]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6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 관련)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 거 법조문		과태료
1.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위반)	법 제20조 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 포함)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미만			12만원
- 0.5**제곱미터** 이상 0.8**제곱미터** 미만			17만원
- 0.8**제곱미터** 이상 1**제곱미터** 미만			25만원
나) 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제곱미터** 이상 1.3**제곱미터** 미만			33만원
- 1.3**제곱미터** 이상 1.6**제곱미터** 미만			42만원
- 1.6**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58만원
다) 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제곱미터** 이상 2.3**제곱미터** 미만			67만원
- 2.3**제곱미터** 이상 2.6**제곱미터** 미만			92만원
- 2.6**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미만			117만원
라) 면적 3**제곱미터**			130만원
- **3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0.5제곱미터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미만			7만원
- 0.5**제곱미터** 이상 0.8**제곱미터** 미만			10만원
- 0.8**제곱미터** 이상 1**제곱미터** 미만			13만원
나) 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제곱미터** 이상 1.3**제곱미터** 미만			17만원
- 1.3**제곱미터** 이상 1.6**제곱미터** 미만			25만원
- 1.6**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42만원

다) 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제곱미터 이상 2.3제곱미터 미만			50만원
- 2.3제곱미터 이상 2.6제곱미터 미만			58만원
- 2.6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미만			75만원
라) 면적 3제곱미터			80만원
- 3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0.5제곱미터당			8만원을 더한 금액
나. 현수막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제곱미터 미만			8만원
-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12만원
-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13만원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제곱미터 이상 3.7제곱미터 미만			17만원
- 3.8제곱미터 이상 4.4제곱미터 이하			22만원
- 4.5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			25만원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33만원
- 6.1제곱미터 이상 8.0제곱미터 이하			50만원
- 8.1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			58만원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80만원
- 10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7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22천원
- 21장 이상			장당 33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7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0천원
- 21장 이상			장당 37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8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13천원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7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0천원
- 21장 이상			장당 37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2호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50만원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83만원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167만원
라. 1년 이상			333만원
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80만원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200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2항		
가. 1회 위반한 경우			25만원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45만원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법 제4조, 제5조 위반의 경우에는 영 별표 8의 과태료 금액 기준의 범위에서 산정금액의 1.5배를 적용한다.

2.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호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⑱ 변경사항	⑲ 비고
	② 성명	③ 생년월일 (남/여)	④ 업소명	⑤ 전화번호	⑥ 주소	⑦ 옥외광고업등록번호	⑧ 종류	⑨ 수량	⑩ 규격	⑪ 표시위치	⑫ 표시기간	⑬ 광고내용	⑭ 준공일자	⑮ 성명	⑯ 주소	⑰ 전화번호		

364x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남/여)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

구비서류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6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1부	수수료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남/여)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

① 신청번호	② 신청일자	신청자			⑥ 광고물등 허가일자 (허가번호)	⑦ 광고물등의 종류	⑧ 표시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물등의 규격	⑩ 검사일자	⑪ 검사구분	⑫ 검사결과	검사자			⑯ 비고
		③ 성명 (남/여)	④ 업소명	⑤ 주소								⑬ 소속	⑭ 직명	⑮ 성명	

364x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9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청구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①번 호	② 교 육 과정명	③ 교 육 수료일자	④ 소 속 업소명	⑤성 명	⑥ 생년월일(남/여)	비 고

210x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7~38

제출연월일	2017. 4. 04.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법제처 및 행정자치부 개선권고사항을 정비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제2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나.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명칭을 상위법령에 표기되어 있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함(안 제2조제1항제7호, 안 제13조 제목)

다. 상위법령에 사용된 용어에 대한 조례에서의 해석규정 삭제 (안 제2조제2항): 심의관련 서류에 대한 해석규정

라. 전자게시대 표출관리 근거 마련 및 전자게시대 설치 규제 완화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마. 주민협의회 위원장 선출 규정 변경(안 제8조제2항제3호)

바. 상위법령 삭제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규정 삭제(안 제23조)

사. 법령의 위임없이 조례로 규정된 사항 삭제(안 제19조, 제24조제7항)

○ 군수권한 조례로 정한 사항, 과태료 면제사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제27조·제32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3. 9. ~3. 29.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결과 반영함(별지 서식에 성별항목 추가함)
(6) 도내 개정완료(3): 하동, 양산, 산청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양 동 인

2017년 5월 10일

거창군 조례 제2376호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 경관, 환경, 산림, 재해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주거 밀집지역(가구와 가구간 거리가 100미터 이내로서 5호 이상 가구가 모여 있는 지역) 또는「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시설부지 경계부터 별표 24에서 정한 거리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집단화 된 농지(우량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높이 1.5미터 이상 울타리(휀스, 차폐수 등)를 설치하고, 2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 완충공간을 확보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역여건상 차폐가 가능한 언덕, 구릉지, 수목과 주민동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6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7(자연녹지지역의 학교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별표 2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0조의3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의3(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 경관, 환경, 산림, 재해 등을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 하지 아니할 것 2. 주거 밀집지역(가구와 가구간 거리가 100미터 이내로서 5호 이상 가구가 모여 있는 지역)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시설부지 경계부터 별표 24에서 정한 거리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집단화된 농지(우량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높이 1.5미터 이상 울타리(휀스, 차폐수 등)를 설치하고, 2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 완충공간을 확보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역여건상 차폐가 가능한 언덕, 구릉지, 수목과 주민동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 설>	제56조의7(자연녹지지역의 학교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별표 24]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세부기준

발전용량(킬로와트)	도로에서 직선거리(미터)	주거밀집지역 또는 관광지 에서 직선거리(미터)	비고
299.9 이하	200	300	
300~599.9	200	400	
600~999.9	200	500	
1,000 이상	200	600	

주1) 발전용량은 연접한 부지 30미터 이내, 동시다발적인 발전시설을 합산한 용량으로 한다.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7~39

제출연월일	2017. 4. 04.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태양광 발전시설 난립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 증가 등 문제점이 야기되는 실정으로, 이를 사전 해소코자 지역 여건을 고려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정하고,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건폐율을 완화하여 토지효율성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 신설(안 제20조의3)

나.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완화(안 제56조의7)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별표 1의2, 제84조제6항제7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569호)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2.8~3.2./3.17.~4.6.

(나) 예고결과: 의견있음(일부반영함)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개정완료(4): 사천, 산청, 함양, 고성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검토의견	처리결과
김택수 외 8명	1.도로에서 거리제한(200m) 규정은 주민과의 민원해결 되면 없어야 함.	1.안 제20조의3제4항에서 주민동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음.(반영)	일부 반영함.
	2. 주거밀집지역에서 거리제한 및 집단화된 농경지 내 입지제한 사항 반대.	2. 입지기준 등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보전 및 무분별한 농지훼손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주거지역에서의 거리제한 사항은 완화 규정을 두었음. (일부 미반영)	
	3. 울타리 설치(H=1.5m 이상) 및 2m이상 완충공간 확보 기준보다는 융통성을 주어야 함.(안 제20조의3 제4항)	3.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화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반영)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양 동 인

2017년 5월 10일

거창군 조례 제2377호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2. 군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군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제7조(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군이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
2.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 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5.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實施設計)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대상에 대하여는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심의를 거친 경우
2.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3.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4.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5. 군수가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6. 군이 인증한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한 경우

③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군으로부터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군이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위원회의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군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건축과에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② 군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건축과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
③ 군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건축과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군수는 군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등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립된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지역계획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을 갖추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공공디자인 조례를 폐지한다.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18조 관련)

1. 대중교통·보행안전·편의·공급·녹지·안내·도로·임시시설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주차 관련 시설물,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흡・배기구), 교통량 검지기, (경)전철 관련 내외부 설치물 등

나.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장애인전용 유도블록, 보호 울타리, 가로등, 보행 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가드레일 등

다. 벤치(의자), 가로 판매대, 퍼걸러(서양식 정자), 셸터(Shelter), 음수대, 환경미화원 대기소, 휴지통(재떨이 포함),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공중전화, 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라. 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무선・휴대전화 기지국, 통신 안테나 등

마. 가로수 보호대(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가로 화분대, 분수대, 배수구 덮개 등

바. 교통 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문화재 안내,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지정 벽보판(광고판),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

사.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입체교차로,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회전형 교차로 등

아. 보도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방음벽(시설), 방호 울타리, 중앙 분리대, 낙석 방지망,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자.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공개・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 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걷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

차. 공사용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2.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환경조형물

나.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다. 벽화
라. 슈퍼그래픽
마. 미디어아트 등

3. 공원, 휴양 공간, 광장 내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 공간, 하천·수변 공간, 가로 공간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4.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교통시설, 환경시설의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기관 청사, 주민센터, 공공교육・연수시설, 소방서 등
나. 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도서관, 의료시설, 체육관・경기장, 공연・전시장, 홍보・기념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다. 관제센터, 터미널, 요금소, 공영주차장 등
라.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
5. 안전, 위생, 복지, 편의, 관광용품 등 공공용품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사용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교통차단장비 등
나. 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등
다. 장애인용품, 공공 영유아 용품 등
라. 실내용 가구, 사무용품, 행사용품, 정보 안내용품 등
마. 기념품, 공공공예품 등
6.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정체성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해 사용하는 시각이미지가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의안 번호	2017~32

발의일자	2017. 4. 3.
발 의 자	김향란 의원 외

1. 제정이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신규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안 제5조)

나.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7조)

다.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안 제12조)

라.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 도시건축과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4. 7.~4. 1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조례현황: 경남도, 양산시, 통영시, 함안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양 동 인

2017년 5월 10일

거창군 조례 제2378호

거창군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목 “거창군 상수도사업 설치조례”를 “거창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 제3조, 제6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본문, 제17조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 중 “상수도사업”을 “수도사업”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부대되는”을 “부대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 이에”를 “그 밖에 이와”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 중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 제목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의하여”를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군의”를 “거창군”으로 “한다)가”를 “한다)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를 “할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행하는”을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업”을 “사업을 할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계리한다.”를 “회계처리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명의로”를 “이름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명”을 “이름”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제2호”로 한다.
제18조 제목 “(계리상황의 보고)”를 “(회계처리 상황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계리상황”을 “회계처리 상황”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월 보고인 경우에는”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은”으로 “한 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20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거창군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거창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 ----------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2조(사업의 범위) ---------- --수도사업이란------각 호------- 1. 수도사업----------부대하는--- 2. ---------- -----부대하는--- 3. 그 밖에 이와--------부대하는---
제3조(급수구역) 거창군 상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거창군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3조(사업구역) -------수도사업--- ----------
제4조(관리자의 지정) 상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두되, 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	<삭 제>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5조(조직) ---------- ----------범위 ----------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상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수도사업------- ---------- <삭 제>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현 행	개 정 안
일반 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삭 제>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상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사업의 회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거창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상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수도사업----------에 따라 수도사업----------수도사업----------수도사업----------수도사업---------- ② 수도사업----------그 밖에----------수도사업----------
제10조(회계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 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 연도와 같다.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회계연도----------회계연도----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상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 관련 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군정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일반회계부담) -------그 밖의----------따라 수도사업----------각 호----------거창군----------한다)에서---------- 1.----------에 따른---- 2.----------따라---------- 3. 그 밖에----------수도사업----------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제12조(출자) ①----------각 호----------수도사업----------

현 행	개 정 안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 사업	1.----할 경우 2.---------- 하는---- 3.----------사업을 할 경우
②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② 수도사업----------각 호에 따른---------- ---------- --------회계처리 한다.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입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 ---------- ---------- 에 따른---------- ---------- ----------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상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④ ---------- 수도사업---------- ----------해당 연도---- ----------따른--- ----------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 보조	제13조(재정지원) ---------- ----------수도사업----------하는-------- ---------- 1.-------에 따른----- 2.----------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담으로 하여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제14조(지방채) ①----------에 따른----------수도사업-------- ----------이름으로------- ---------- ----------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 ----------아름---------- ----------이름----------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삭 제>

현 행	개 정 안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 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잉여금의 처분) ---------- ---------- ---------- 1.--------따른---------- 2.---------- ---------- <삭 제> 4.---------제1호·제2호---------- ---------- ---------- ---------- --------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생 략)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상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수도사업-----------
제18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상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 명세서 2.「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 계정명세서	제18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 에 따라----------수도사업- 회계처리 상황---------- ---------- 각 호---------- 1.---------- 2.----------따른------- ----- 3.---------- 4.----------

현 행	개 정 안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다음 각호에 게시하는 업무상황설명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 략)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상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5. 그 밖에--------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 ---------- ---------- ---------- ----------각 호---------- ---------- 1.--------- 2.----------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은---------- ------한정한다) 3. ---------- 수도 사업---------- ----------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 ---에 따라----------수도사업 ---------- ---------- -----

거창군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7~40

제출연월일	2017. 4. 04.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법제처 및 행정자치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군수가 임명하는 것이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함(안 제4조)

나. 군수의 인사권 침해 소지가 있는 사항 삭제함(안 제6조)

다. 관리자가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때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을 위반하여 관리자의 권한을 제한함으로 삭제함(안 제8조)

라. 수입증가분을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로 사용할 수 있는 수입금 마련 지출에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삭제함(안 15조)

마. 잉여금의 처분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위배 소지가 있어 삭제함(안 제16조제3호)

바. 용어 정비 및 순화

○ 상수도사업 ⇒ 수도사업

○ 기타 ⇒ 그 밖에, 당해 ⇒ 해당, 의 규정에 의하여 ⇒ 에 따라

○ 각호 ⇒ 각 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기업법」제2조, 제7조제2항, 제11조, 제27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3. 10.~3. 3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개정 현황

○ 개정완료(5): 거제, 진주, 통영, 밀양, 양산(일부 조문 개정완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양 동 인

2017년 5월 10일

거창군 조례 제2379호

거창군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목 “거창군 하수도사업 설치조례”를 “거창군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부대되는”을 “부대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을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 이에”를 “그 밖에 이와”로 한다.

제3조 중 “군하수도사업”을 “거창군 하수도사업”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 중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의하여”를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가”를 “한다)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를 “할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행하는”을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업”을 “사업을 할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계리한다.”를 “회계처리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이내”를 “이하”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명의로”를 “이름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명”을 “이름”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의하여”를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제2호”로 한다.

제18조 제목 “(계리상황의 보고)”를 “(회계처리 상황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계리상황”을 “회계처리 상황”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년도”를 “다음 연도”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월 보고인 경우에는”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은”으로 “한 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20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거창군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거창군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2조(사업의 범위) ---------- ------이란----각 호---------- ------ 1.----------부대하는--- 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부대하는-- 3. 그 밖에 이와--------부대하는---
제3조(사업구역) 군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로 한다. 다만,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사업구역) 거창군 하수도사업--- ---------- ---------- ---------- ---------- ---------- ----------
제4조(관리자의 지정) 군수는 하수도사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기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두되, 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	<삭 제>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5조(조직) ---------- ----------범위 ---------- ----------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 ---------- ----------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 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삭 제>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의 회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거창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에 따라----------
제11조(일반회계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군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군정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일반회계부담) ----------그 밖의---------- 따라----------각 호---------- ----------한다)에서 ---------- 1.----------에 따른 ---- 2.----------따라---------- 3. 그 밖에----------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출자로	제12조(출자) ①---------- -------각 호---------- ---------- 1.----할 경우 2.----------하는---- 3.----------사업을 할 경우 ② ----------각 호에 따른---------- ---------- ---------회계처리 한다. ③ ----------

현 행	개 정 안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에 따른---------- ----해당----------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내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④ ---에 따라---------- 해당 연도----------이하---- ----따른----------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재정지원) ---각 호---------- ----------하는---------- 1.-------에 따른----- 2.----------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제14조(지방채) ①----------에 따른---------- ----------이름으로----------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 ----------아름---------- ----------이름----------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삭 제>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제16조(잉여금의 처분) ----------

현 행	개 정 안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 ----------각 호-----따라 --------- 1.--------따른---------- 2.---------- ---------- <삭 제>
제18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8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 에 따라---------- 회계처리 상황---------- ---------- 각 호---------- 1.---------- 2.----------따른------- 3.---------- 4.---------- 5. 그 밖에--------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은 같은 해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 년도 2월 말일까지 다음 각호에 게시하는 업무상황설명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생 략)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 ---------- ---------- ----------다음 연도----------각 호--------- ---------- ---------- 1.--------- 2.----------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은---------- 한정한다)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② (생 략)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에 따라**----------

거창군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7~41

제출연월일	2017. 4. 04.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법제처 및 행정자치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군수가 임명하는 것이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함(안 제4조)

나. 군수의 인사권 침해 소지가 있어 삭제함(안 제6조)

다. 관리자가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때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을 위반하여 관리자의 권한을 제한함으로 삭제함(안 제8조)

라. 수입증가분을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로 사용할 수 있는 수입금 마련 지출에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삭제함(안 15조)

마. 잉여금의 처분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위배 소지가 있어 삭제함(안 제16조제3호)

바.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함

○ 기타 ⇒ 그 밖에, 당해 ⇒ 해당, 의 규정에 의하여 ⇒ 에 따라

○ 각호 ⇒ 각 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기업법」제7조제2항, 제11조, 제27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2. 6.~2. 2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개정 현황

○ 개정완료: 거제시, 창원시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양 동 인

2017년 5월 10일

거창군 조례 제2380호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를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6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 제>

[별지 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제13조제1항 관련)

<table>
<tr><td colspan="9">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td></tr>
<tr><td rowspan="3">설치자</td><td>법 인 명</td><td colspan="7"></td></tr>
<tr><td>성명(대표자)</td><td colspan="3"></td><td>생년월일</td><td colspan="3">(남/여)</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시공자</td><td>법 인 명</td><td colspan="7"></td></tr>
<tr><td>성명(대표자)</td><td colspan="3"></td><td>생년월일</td><td colspan="3">(남/여)</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5">배수설비현황</td><td>설치목적</td><td colspan="8">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그밖에(　　) 배제</td></tr>
<tr><td>설치위치</td><td colspan="8">읍·면</td></tr>
<tr><td>관 종</td><td colspan="8">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그 밖의 관</td></tr>
<tr><td>관 경</td><td>ø 밀리미터</td><td>연장</td><td>미터</td><td>접속방법</td><td colspan="4">하수관, 맨홀, 다른 배수설비, 그 밖의 접속</td></tr>
<tr><td>배출수량</td><td colspan="2">세제곱미터/일</td><td colspan="6">※ 제17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td></tr>
<tr><td rowspan="11">준공검사</td><td colspan="2" rowspan="2">검 사 항 목</td><td rowspan="2">1차 검사
검사일자
(　.　.　)</td><td rowspan="2">보완사항</td><td rowspan="2">2차 검사
검사일자
(　.　.　)</td><td rowspan="2">비고</td></tr>
<tr></tr>
<tr><td colspan="2">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4.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7. 그 밖에 위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별표의 기준 준수여부</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검 사 자</td><td colspan="2">성명 (서명 또는 인)</td><td colspan="2">성명(서명 또는 인)</td></tr>
<tr><td colspan="6">※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td></tr>
<tr><td colspan="9">「하수도법」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td></tr>
<tr><td colspan="7">구비서류: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td><td>수수료</td><td></td></tr>
</table>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7~42

제출연월일	2017. 4. 04.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하수도법」제24조에 따라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만 받으면 점용행위가 가능하므로,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로 별도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는 의무부과 조항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위임 없이 별도로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는 의무부과 조항 삭제(안 제6조)

※ 행정자치부 정비과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제24조

○「하수도법 시행령」제19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3. 10.~3. 30.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반영함(별지 서식에 성별항목 추가함)

(6) 도내 개정완료(5): 거제시, 양산시,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양 동 인

2017년 5월 10일

거창군 조례 제2381호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를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의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수립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적 조건 현황: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 등
2. 군의 사회적 조건 현황: 인구, 하천 이수(利水),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3. 군의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과의 관계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결과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군 특성에 맞는 성과관리 체계
6. 제5호에 따라 평가한 결과 및 결과에 대한 조치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권고 및 설치 확인)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법 제8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을 신축하는 자
2. 제1호의 시설물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규모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
가. 증축으로 누적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재축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설치 결과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빗물이용시설 사용계획서
2. 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

④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한다.

제4조(중수도의 권고 및 설치 확인)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중수도를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법 제9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물 중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이 되도록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는 자가 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 설치 결과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중수도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중수도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④ 군수는 중수도 설치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시설이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한다.

제5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①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된 물(이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라 한다)의 요금은 법 제21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하수처리장별로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② 청소용수 등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급하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면제한다.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상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경감) ①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상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하는 공공청사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받으려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경감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제8조(시범사업 발굴)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교육·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군민들이 물 재이용 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물의 재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상수도요금 경감기준(제7조 관련)

경 감 대 상	경 감 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은 자	가정용	60퍼센트
	일반용	40퍼센트
	산업용	20퍼센트

주) 경감비율은 요금을 기준으로 경감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하수도 사용료 경감기준(제7조 관련)

경 감 대 상	경 감 율
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50퍼센트
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20퍼센트

주) 경감비율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경감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별지 제1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건축주 성명	(남/여)	전화번호	
건축물 주소			
건축물의 주 용도		건축 연면적(제곱미터))	
지붕면적(제곱미터)		빗물 저류조 용량 (세제곱미터)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 (제곱미터))			
빗물 이용 예정 수량 (세제곱미터)/일)		빗물 이용의 주 용도	
빗물처리 용량 (세제곱미터/일)		빗물처리방법	
설치완료일		가동개시일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 수도사업소장 귀하

첨부서류	1. 빗물이용시설 사용계획서 1부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3.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	설치확인서 발급
신고인		물 재이용 담당부서		물 재이용 담당부서		물 재이용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시설 설치자	주 소			
	성 명			
	연 락 처 (전화번호)			
시설 설치 명세	시설 위치			
	시설 용량	세제곱미터		
	사용 용도			
	설치 비용	원		
	착공일		완료일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 수도사업소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중수도 설치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건축주 성명		(남/여)	전화번호
건축물 주소			
건축물의 주 용도			건축 연면적(제곱미터)
중수처리 용량 (세제곱미터/일)			
중수 이용 예정 수량 (세제곱미터/일)			
설치완료일			가동개시일
빗물처리 용량 (세제곱미터/일)			
중수의 주 용도			
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중수도의 안정성	수질 악화 시 대책		
	오접(誤接)·오음(誤飮) 방지대책		
	환경 보존 조치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 수도사업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	설치확인서 발급
신고인		물 재이용 담당부서		물 재이용 담당부서		물 재이용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발급번호 제 호

중수도 설치확인서

건축주 성명	
건축물 주소	
중수처리방법	
중수처리 용량 (세제곱미터/일)	
중수이용 예정 수량 (세제곱미터/일)	
설치완료일	
가동개시일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 수도사업소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7~43

제출연월일	2017. 4. 04.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현행 조례의 물 재이용시설 권고대상 기준을 법적기준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물 재이용시설 설치를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빗물이용시설의 권고 및 설치 확인 정비(안 제3조)

○ 중수도의 권고 및 설치 확인 정비(안 제4조)

○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정비(안 제5조)

○ 상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의 경감 정비(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21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11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예산, 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2. 6.~2. 2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개정완료(5): 거제시, 진주시, 남해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양 동 인

2017년 5월 10일

거창군 조례 제2382호

거창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

거창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

의안 번호	2017~44

제출연월일	2017. 4. 04.
제 출 자	거창군수

1. 폐지이유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가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위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신설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일정한 시설·장비·기술인력을 갖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에게만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를 대행하도록「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거창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거창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제19조2부터 19조의5까지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2. 6.~2. 2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폐지완료(2): 김해시, 양산시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양 동 인

2017년 5월 10일

거창군 규칙 제1224호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을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중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를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제12호·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2조(배수설비의 설치신청) ①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2조(배수설비의 설치신청) ①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점용허가 준공)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별지 제2호서식】

<table>
<tr><td colspan="6">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td><td>처 리 기 한
7 일</td></tr>
<tr><td rowspan="2">신
청
자</td><td>주소</td><td colspan="5"></td></tr>
<tr><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 colspan="2">(남/여)</td><td>전화번호</td><td></td></tr>
<tr><td colspan="2">공 사 종 별</td><td colspan="5">신설 개축 증축 수선 그 밖에</td></tr>
<tr><td colspan="2">시 공 장 소</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공 사 내 용</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급 수 시 설</td><td colspan="2">구경 밀리미터</td><td colspan="2">모타펌프 대</td><td>그 밖에</td></tr>
<tr><td colspan="2">배 출 량</td><td>생활하수</td><td colspan="2">세제곱미터/일</td><td>사업장폐수</td><td>세제곱미터/일</td></tr>
<tr><td colspan="7">「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취하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거 창 군 수 귀하</td></tr>
<tr><td colspan="7">※ 구비서류 없음</td></tr>
</table>

【별지 제10호서식】<삭 제>

<table>
<tr><td colspan="6">공공하수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td><td>처 리 기 한
10 일</td></tr>
<tr><td rowspan="2">신
청
인</td><td>주 소</td><td colspan="2"></td><td>상 호</td><td colspan="2"></td></tr>
<tr><td>대표자성명</td><td></td><td>생년
월일</td><td>(남/여)</td><td>전화번호</td><td></td></tr>
<tr><td rowspan="6">신
청
내
용</td><td colspan="2">설치목적</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설치장소</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공사실시
방 법</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공사내용
(구 조)</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공사
기간</td><td>착공</td><td colspan="4"></td></tr>
<tr><td>준공</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7">「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거 창 군 수 귀하</td></tr>
<tr><td colspan="7">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td></tr>
</table>

【별지 제12호서식】

동번		하수번호
구경	㎜	하수종별
업태		

하수량 점검 카드

소유자	주소		소유자	주소	
	성명	(남/여)		성명	(남/여)

점검		사용	1시간당	업종	사용량1	업종	사용량2	근거	감량	월수	가구수	사용량	사용	연건평	확 인	
월	일	시간	출수량										인구		점검원	심사

【별지 제12호서식 뒷면】

월일	산출근거	사용자 확 인	계 기 설 치 상 황							
			일 자	지 침	기물번호	철 거	일 자	지 침	기물번호	철 거
			양 수 시 설							
			자 동 모 타 펌 프							그 밖에
			HP	대 수	구 경	HP	대 수	구 경		
			상수도	수전번호	업 종	사용량	미수납	납 기	금 액	그 밖에

【별지 제17호서식】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환불 청구서					처리기한 즉 시
수 신	거 창 군 수				
관리자의 성명			생년월일		
	월분	내 용	과오납금액	환불이자	청구금액

위의 과오납금을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남/여)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금 영수증

수 신	거 창 군 수				
연 도	월분	내 용	과오납금액	환불이자	청구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 수 자 성 명: (인)
생 년 월 일: (남/여)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17~28

제출연월일	2017. 3. 31.
제 출 자	수도사업소장

1. 제안이유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에서 규칙으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한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신청에 관한 근거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위임 없이 별도로 준공검사를 받도록 한 조례상의 의무부과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관련된 규칙 조항을 삭제함(안 제11조, 별지 제10호서식)

○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설치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준공검사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제출

나. 띄어쓰기함(안 제목, 제1조, 제2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제24조

○「하수도법 시행령」제19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3. 10.~3. 30.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반영함(별지 제2호·제12호·제17호서식에 성별항목 추가)

(6) 도내 개정완료(2): 거제시, 남해군

거창군 공고 제2017-579호

거창군관리계획[시설결정: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에 따른 열람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거창군관리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입안을 위하여 같은 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열람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05. 04.

거 창 군 수

1. 군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 환경기초시설

가.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2	지리골 매립장	일반 폐기물처리 시설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272번지 일원	46,900	증)27,680	74,580	경상남도 제1999-317호 ('99.12.23)	

나.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지리골 매립장	▪ 부지 확장 - 면적:46,900㎡ → 74,580㎡ (증27,680㎡)	기존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의 사업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기존폐기물처리시설 부지확장을 통하여 매립기간을 연장하고, 거창군내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처리를 위해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장하고자 함.

2.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3. 열람장소 : 거창군 도시건축과(☎055-940-3583) 및
환경과(☎055-940-3502)

4. 관계도서 열람 및 의견 제출방법 :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및 환경과에 비치하며,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열람기간 만료일까지 의견서(열람장소에 비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공고 제2017-582호

군 계 획 시 설(교통시설 : 소로3 - 164, 3-165호선) 사 업 실 시 계 획 (변경) 인 가 를 위 한 열 람 공 고

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164,165호선)의 사업(변경)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7. 05. 04.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 개요

구분	종류	명 칭	위 치		시 행 규 모						시 행 구 간	최 초 결정일	사업기간
			읍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 적 (㎡)			
당초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3-164호선)	거창	동변	소로	3	164	228	6.0	1,728	거창읍 동변리 514-2번지	거고25호 ('02.6.10)	2015.09~ 2017.08.30
		도시계획도로 (소로3-165호선)				3	165	165	6.0	1,275	거창읍 동변리 1160-4번지		
변경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3-164호선)	거창	동변	소로	3	164	228	6.0	1,728	거창읍 동변리 514-2번지	거고25호 ('02.6.10)	2015.09~ 2017.12.31
		도시계획도로 (소로3-165호선)				3	165	165	6.0	1,275	거창읍 동변리 1160-4번지		

2. **사업 시행자** :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번지(상림리 64-1번지) 거창군수

3. **사업 설계도** : 기재 생략

4. **열람 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따로붙임

6.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7. 의견제출 및 열람 : 위 열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 (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우편번호 : 50132 /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03(상림리 64-1번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이나 전화(055-940-3595), FAX(055-940-3579), E-mail(clovercs@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 성 명 :
- ○ 연락처 :
- ○ 기타 참고사항. "끝".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소로3-164호선

일련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8,424	1728					
1	거창읍 동변리	514-2	도	53	24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표 재 준			
2	"	1164-2	도	6588	210		국(건설부)			
3	"	514-4	대	55	55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표 재 준			
4	"	514-3	도	56	56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표 재 준			
5	"	512-6	대	56	56		거 창 군			
6	"	511-1	도	131	131		"			
7	"	512-5	대	16	16		"			
8	"	511-2	대	74	74		"			
9	"	211-2	대	36	36	거창읍 동변리 471	표 재 성			
10	"	205-1	대	24	24		거 창 군			
11	"	211-1	도	72	61		"			
12	"	210-1	대	27	27	거창읍 동변리 200	염 익 환			당초
	"	210-1	대	27	27		거 창 군			변경
13	"	209-1	대	71	71	거창읍 동변리 209	표 복 남			당초
	"	209-1	대	71	71		거 창 군			변경
14	"	213-1	도	27	21		거 창 군			
15	"	213-2	대	24	24	거창읍 동변리 213	박 성 근			
16	"	215-3	대	331	125	거창읍 동변리 216	신창표씨모제영상공파종종			
17	"	215-8	대	153	153	거창읍 동변리 216	신창표씨모제영상공파종종			
18	"	216-1	대	5	5	거창읍 동변리 216	신창표씨모제영상공파종종			
19	"	215-7	대	44	44	거창읍 동변리 216	신창표씨모제영상공파종종			
20	"	227-2	대	250	235		거 창 군			
21	"	227-1	도	126	86		"			
22	"	226-2	도	34	23		"			
23	"	226-3	전	171	171		"			

○ 소로 3-165호선

일련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29,734	1,275					
1	거창읍 동변리	1160-30	구	21,746	30		국(건설부)			
2	〃	1164-2	도	6588	431		국(건설부)			
3	〃	187-3	도	30	19		거 창 군			
4	〃	241-3	창	33	33	거창읍 동변리 237	백 영 채			당초
	〃	241-3	창	33	33		거 창 군			변경
5	〃	188-1	도	29	29		거 창 군			
6	〃	240-2	답	34	34	거창읍 동변리 231	김 영 준			당초
	〃	240-2	답	34	34		거 창 군			변경
7	〃	188-2	답	18	18		거 창 군			
8	〃	240-1	도	10	10		〃			
9	〃	239-1	대	12	12	거창읍 동변리 238	이 재 순			당초
	〃	239-1	대	12	12		거 창 군			변경
10	〃	189-3	답	20	20		거 창 군			
11	〃	190-2	답	1	1		〃			
12	〃	190-1	도	69	19		〃			
13	〃	191-1	도	37	19		〃			
14	〃	235-2	대	28	28		〃			
15	〃	235-1	도	5	5		〃			
16	〃	234-6	전	25	25		〃			
17	〃	234-4	도	6	6		〃			
18	〃	192-2	대	30	30		〃			
19	〃	234-5	전	89	89		〃			
20	〃	192-1	도	10	10		〃			
21	〃	234-3	도	5	5		〃			
22	〃	233-1	도	3	3		〃			
23	〃	233-2	대	16	16		〃			
24	〃	193-6	대	6	6		〃			
25	〃	193-4	도	7	7		〃			
26	〃	193-5	대	54	54		〃			당초
	〃	193-5	대	54	5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167,105동1101호	표영길			변경

일련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27	〃	231-4	대	19	19	대구 달서구 용산동 890-5	구 경 숙			
28	〃	193-3	도	68	68	거창읍 동변리 471	표 봉 대			당초
	〃	193-3	도	68	6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167,105동1101호	표 영 길			변경
29	거창읍 동변리	231-3	도	9	9		거 창 군			
30	〃	194-2	대	46	46		〃			
31	〃	194-1	도	19	19		〃			
32	〃	195-3	대	61	61		〃			
33	〃	195-2	도	20	20		〃			
34	〃	227-2	대	250	15		〃			
35	〃	227-1	도	126	23		〃			
36	〃	226-2	도	34	5		〃			
37	〃	226-3	전	171	31		〃			